

의안번호	제 37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6월 일 (제 281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4
----------	-----

발의연월일 : 2009년 6월 2일
 발 의 자 : 강태원, 연만흙, 김환동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

- 행정재산·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안 제4조)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총괄재산관리관(행정국장) 부위원장 : 회계과장
 - 위 원 : 도지사가 임명하는 본청과장 7명

- 다.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 완화(안 제28조제4항제6호)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 30명 이상
 -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퍼센트 이상 → 30퍼센트 이상
- 라.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 (안 제32조제3항 신설)
-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30 감면
-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안 제28조제4
항제5호)
- 「건축법」 제49조제1항 → 「건축법」 제57조제1항
 - 영 제29조제1항제14호 →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행정국)
- 다. 예산조치 :
- 라. 규제심사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법무·도시계획·지적·농지·건축·소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을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관리 및 처분)”을 “(관리)”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제23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
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나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법무·도시계획·지적·농지·건축·소방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의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p> <p>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u>잡종재산</u>의 용도변경 5. (생 략) <p>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건축법 제49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 략)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행정재산</u>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u>일반재산</u>의 용도변경 5.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건축법</u>」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 다. (생략)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은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가. ~ 다.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은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

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4. (생 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도 소유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나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도 소유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67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예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p>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2호나목을 삭제한다.”</p>
--	--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4.27]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4.27]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4.27]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시행 2009.4.27.]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09.4.27.]